

第26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 93. 7. 30 ~ 7. 31)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1. 제2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3

2. 제2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9

3. 부 록

가) 의사일정(안) 29

나)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31

다)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안 41

본 회 의 회 의 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

1993년 7월 30일 (금요일) 14시 30분

의 사 일 정 (제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안

부 의 된 안 건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2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안

(사회 : 의사과장 이영규)

(14시 30분 개식)

● 의사과장 이영규

지금부터 제2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p>바로 본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p>	<p>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 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안을 심의·의결 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p>
<p>1. 경과보고 (14시 31분)</p> <p>● 의장 김영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충청북 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 겠습니다. ● 의사과장 이영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 및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27일 집행청으로부터 집회요구 가 있어 교육위원회 공고 93-9호로 7월 27일 긴급 공고하였습니다. 두번째, 저번 회의 25회 교육위원 회 의결안건 처리결과 입니다. 충북공업고등학교 설립계획안, 그리 고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안을 '93년 7월 24일 집행기관에 이 이송하였습니다.</p>	<p>2.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32분)</p> <p>● 의장 김영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충 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통보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 2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는 7 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2일간으로 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6회 충청 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7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2일간으로 결 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p>
<p>세번째, 금회안건 처리내용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p>	<p>3.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 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p>

<p style="text-align: right;">(14시 33분)</p> <p>● 의장 김영세</p> <p>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p> <p>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구하겠습니다.</p> <p>주무국장인 관리국장께서는 선진지시찰관계로 출장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두 의안 모두 주무과장들이 나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p> <p>(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옴)</p> <p>●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희</p> <p>기획감사담당관 선택희입니다.</p> <p>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겠습니다.</p>	<p>수고하셨습니다.</p> <p>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2차 본회의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참 조)</p> <p>1.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p> <p style="text-align: right;">(끝에 실음)</p> <p>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p> <p>● 의장 김영세</p>	<p>4.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안</p> <p style="text-align: right;">(14시 40분)</p> <p>● 의장 김영세</p> <p>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안을 상정합니다.</p> <p>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옴)</p> <p>● 총무과장 고일영</p> <p>총무과장 고일영입니다.</p> <p>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참 조)</p> <p>1.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안</p> <p style="text-align: right;">(끝에 실음)</p> <p>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p> <p>● 의장 김영세</p> <p>예, 수고하셨습니다.</p>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도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들으신 2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조례심사위원회 구성에 찬등하여 주시는 거지요.

그러면 이 조례심사위원으로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김광수위원, 이상일위원, 이재희위원, 홍신희위원, 장충호위원 등 다섯분을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하여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광수위원, 이상일위원, 이재희위원, 홍신희위원, 장충호위원 등 다섯분을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하여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조례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아울러서 선출해 주시기 바라며, 소위원회에서는 동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14시 44분)

● 의장 김영세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박병해, 이근수 두분 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박병해, 이근수 두분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두분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어떻게 이의 없으시지요?

<p>(“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p> <p>예, 그러면 이상으로 제2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p>	<p>산회를 선포합니다.</p> <p>(14시 45분 산회)</p>
<p>출석위원수 : 11명</p> <p>의장 김영세, 부의장 김광수, 위원 이상일, 이재희, 홍신희, 김응복,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p> <p>출석공무원 : 14명</p> <p>부교육감 박동기,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공보담당관 정금옥,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초등장학과장 김학묵,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중등장학과장 송대현, 사회교육체육과장 정철진,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정헌동, 시설과장 박성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일정(안) : 별첨 1. ○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 별첨 2. ○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안 : 별첨 3. 	

본 회 의 회 의 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

1993년 7월 31일 (토요일) 10시 31분

의 사 일 정 (제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안
3. 기타 안건처리

부 의 된 안 건

1.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안
3. 기타 안건처리

(사회 : 의사과장 이영규)

(10시 31분 개의)

● 의장 김영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
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

겠습니다.

● 의사과장 이영규

조례심사소위원회로부터 충청북도교
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
한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
공인조례안이 심사보고서와 함께 부의
되어 있습니다.

<p>따라서 금일은 동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홍신희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후에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시겠습니다.</p> <p>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p>	<p>우리 소위원회 다섯분의 위원일동이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립니다.</p> <p>7월 30일 동 조례안이 본회의로부터 조례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당일 상정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p>
<p>1.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p> <p style="text-align: right;">(10시 32분)</p> <p>● 의장 김영세</p> <p>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p> <p>먼저 동 조례안에 대한 조례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p> <p>홍신희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홍신희위원장 사회대로 나옴)</p> <p>● 홍신희 위원장</p> <p>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p> <p>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홍신희위원입니다.</p>	<p>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 9명으로 하되, 5명의 위원은 법관·교육자·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로, 4명의 위원은 교육위원 2명, 교육감 소속공무원 2명으로하여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구성 인원수를 적용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 등 제반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 처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하므로써 공직윤리위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토록 하므로써 장기 재임에서 오는 침체 및 불합리를 방지하고, 공무</p>

원 및 교육위원의 신분 변동시에 대한 임기 및 결원시 위촉된 위원의 임기 등을 세밀히 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천명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를 확립토록 한다”라는 본 뜻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기타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잘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바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홍신희 조례

심사소위원장께서, 그리고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는 집행청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권혁풍위원 질의하시지요.

● 권혁풍 위원

제가 조례안을 신중히 검토를 못해서 의문나는게 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조 목적에 보니까,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따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모범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다음에 다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까지나 독립별도의 기관인데, 거기다 포함을 시키는 것은 그 밑에 관할에만 포함을 시켰지 별도로 시키

지 않은 이유가 뭔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2조 2항에 그 “위원장은 5인중에서 선임한다, 부위원장은 4인중에서 선임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그 선출방식이 명시가 돼있지 않은데 그것은 어떻게 선출하는가 하는 것을 뭐 규정으로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의문이 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3조에 기능을 보니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기 때문에 어디까지 의결을 거쳐야 할텐데, 결정한다는 그 용어가 어떤 그 법원에서 결정한다든가 집행부에서 결정한다는 그런 어감을 느끼는데, 그래서 다음을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6조 2항에 보니까 그 “의결한다”라고 나온게 있고, 6조 3항에 보니까 “심사·의결”이 또 있습니다.

6조 4항도 또 “심사·의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서는 심사의 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어찌 심사결정이라고 되어 있는가, 뭐

의미가 다른 것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특별히 결정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뭔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공직자가 대상에 들어 가는데, 이걸 제가 모법을 충분히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퇴직공직자가 어디까지 그 한계가 있는가, 모법에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조에 1항 1호부터 3호까지 재산공개 대상자, 또 8조 11항, 후단 승인관계, 그 11조 규정 승인관계 이것도 역시 모법에 다 있을텐데, 제가 아직 미처 검토를 못해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것인가 내용이.

그래서 여기 미처 그 선출방식 같은 것이 의장·부의장의 선출방식, 그것도 기타의 권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의 권한이 어떤 것인가, 혹은 여비도 주고 수당도 주는데 여비·수당 주는 규정도 있어야 될텐데 그것도 규정으로 정할 것인가, 하는 것도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모법으로 들어가서 모법

에 대한 답변을 물론 해주실 분이 없
겠습니다만 모범이 기본이 되기 때문
에 좀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서
한개 질문을 드립니다.

그 관계법령 발췌해서 공직자윤리
법에 그 9조 4항인가요, 그 제일 끝
부분입니다. 아, 6호에 나오는데 저
희들한테 해주신 의안 제일 뒤에 6호
에 보니까, “서울특별시·직할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군·구 공
직자윤리위원회와 서울특별시·직할
시·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당
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만든다”
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직할시·도 공
직자윤리위원회 하면 이전 광역 공직
자윤리위원회라고 개념을 정할 수가
있겠고,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
회라면 소 자치단체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
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이렇게 세가
지로 정립을 시켜 놓으셨는데, 이 세
번째 역시 교육청 것도 역시 한개 지
방자치단체로서 인정을 해 주었습니
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고 되
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역 지방자
치단체, 기초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3개로 인정이
된거 같은 그런 법규정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며는 어디까지나
교육청을 지방자치단체로 인정을 한
즉 복수단체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만든 조례
가 도의회까지 가야되느냐, 어디까지
나 우리가 인정이 된 지방자치단체라
면 우리가 만든 조례가 다시 도의회
에 가서 통과를 봐야 되느냐 하는 그
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
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만이 1대 1 답변
으로 하고요.

그러면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석 침묵)

예, 그러면 다른 위원은 소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관계서 이 답변을 하여 주시죠?

어떻게 바로 되시겠습니까?

준비가 필요하다면 준비시간 드리죠?

●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회

준비가 필요합니다.

● 의장 김영세

예,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떻게 10분간이면 되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회

예.

● 의장 김영세

예, 10분간만 정회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계속)

● 의장 김영세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계관계서 답변하여 주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옴)

●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회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회입니다.

권혁풍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교육위원회에 별도 설치하지 않은데 대한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법인 공직자 윤리법 제9조 1항내지 2항에 규정됨으로써 조례에서도 교육위원회를 분류해서 위원회에 들 수 없는 걸로 규정을 했습니다.

또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방법을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9조 운영규정으로 선임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3조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사항이며 위원회의 질문사항이기 때문에 결정으로 조항에 규정을 했습니다. 네번째, 퇴직공직자 범위기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후 2년간이며 매년 1월에 변동 사항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제안설명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질문하셨기 때문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 제8조 11항 후단에 규정된 심사의결과 허위 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경우 조사승인에 대한 사항이고, 또 법 제17조 1항 단서규정은 등록의무자가 퇴직후 담당하였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 대한 승인입니다.

그리고 법 제8조 제6항, 제11항에 규정된 것은 허위 등록자의 조사의뢰 승인입니다.

법 제8조 6의 규정은 등록채산을 허위로 기재한 자의 조치입니다.

그 내용은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을 말합니다.

법 제22조에 규정된 재산등록규정은 재산등록하지 않은 자, 변동신고 소명자료 미첨부자의 해임, 또는 징

계의결 요구하는 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법 제23조내지 20조에 규정된 사항은 재산등록 거부, 허위자료 제출, 출석 거부, 무허가 열람 복사한 경우, 비밀 누설, 취업제한 위반자를 고발할 경우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을 득하게 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에서는 여비·수당 지급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9조에 의해서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내용을 넣겠습니다.

일곱번째 질문인 동조례안 도의회까지 가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종류를 제9조 6항에 3가지로 구분하여 예시적으로 나열한 조항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기타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기능으로는 재산등록 열람·복사의 승인과, 또 비위자의 조사 및

범죄수사, 또는 국회요구 사항 등의 위반자의 해임·징계의결 요구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는데.....

● 의장 김영세

어떻게 보충질의 더 있으십니까?

● 권혁풍 위원

예.

● 의장 김영세

예,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풍 위원

다른 것은 다 이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9조 6항에 관한 것, “그것이 예시규정이다”라고 그냥 간단히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예시되지 않은 것 뭐 다른 것 또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지금 다른 사항은 빠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혁풍 위원

그러면 그걸 예시라고 해석을 하세요. 제가 볼때에는 광역을 묶어서 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해놓고, 그 다음에 기초를 묶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교육청을 묶어서 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이렇게 해서 즉 당해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교육청도 거기에 한개 독립기관으로서 인정을 한걸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우리의 도교육청 윤리위원회조례는 우리가 만들어서 도의회에 제출하지 않아도 13조 1항에 속하는 제출할 조례에 포함되지 않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교육위원회가 독립제 기관이나, 아니냐 하는 문제와, 또 지방자치단체가 대개 학설로는 하나이라는 문제, 이 문제들은 구체적인 답변은 담당자로서는 답변의 성격이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권혁풍 위원

물론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은 규정으로 법규를 그대로 보셔야지요, 우선.

냉정하게 그대로 볼 때 그 숨어있는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고

올라갈게 아니라 그 규정자체를 해석을 해 볼때 달리 해석할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원래 이 법의 본래 취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조 제4항, 6항은 시·도자치단체를 3가지로 유형을 분류해서 예시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 권혁풍 위원

아니, 예시말고도 또 있으면 예시라고 보는데 다 총괄한 것 아닙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 3가지를 다 갖다 놓고서 무슨 예시라고 해요, 그건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사견으로 볼 수 밖에 없지요?

뭐 유권적인 해석을 제가 요구한 건데, 이 모법에 대한 해석을 요구한다는 자체가 저도 사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럴 때는 사실을 엄연히 법규를 그대로 해석을 해야죠, 거기다 무슨 확대 해석을 하고 예시규정이라는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게.

●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단독으로 유권 해석을 하기 전에 권혁풍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책임있는 관계기관에 질문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떠한지요?

● 권혁풍 위원

예, 그렇게라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예.

● 권혁풍 위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편리하게 해석함으로써 괜히 자기가 찾을 권한도 제대로 찾지 못한다며는 그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예, 알겠습니다.

● 권혁풍 위원

예, 그건 그렇고요, 그럼.

또 한가지 조금 의문이 나는게 그 퇴직자가 2년이내라고 그랬죠?

●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예, 그렇습니다.

● 권혁풍 위원

예, 그러면 퇴직한지 2년까지는 관

<p>할대상에 들어간다 말씀이죠?</p> <p>●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회 예, 매년 1월이니까, 뭐 1월이 두번 하며는 두번, 한번할 경우도 있고 그 렇습니다.</p> <p>● 권혁풍 위원 퇴직자요.</p> <p>●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회 예.</p> <p>● 권혁풍 위원 그럼 그 등록대상자, 공개대상자 다 포함되는 거죠?</p> <p>●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회 예, 그렇습니다.</p> <p>● 권혁풍 위원 그럼 숫자가 상당히 많겠죠?</p> <p>●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회 그러니까 8월 12일 이후에 등록된 자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그 전에 8월말일자로 퇴직한 분에 대해서는 등록의무가 없습니다.</p> <p>● 권혁풍 위원 아니, 계속 그 숫자가 나올 것 아 닙니까?</p> <p>●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회</p>	<p>예, 그렇습니다.</p> <p>● 권혁풍 위원 그러면 그 숫자가 상당히 많으리라 고 보는데, 그 퇴직자들이 관할 대상 에만 들어가고 그 윤리위원회에 포함이 안된다면 그것도 균형이 깨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 위원이 관할 대상에 들어가니까 윤리 위원회도 포함이 돼야 되고, 또 공직 자들중에서도 관할 대상에 들어가니 까 또 위원회에 포함이 되는데, 퇴직 자는 윤리위원회에 포함시킬 수가 없 다고 하며는 그것도 불균형이라고 보 니다.</p> <p>●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직자나 또는 교육위원 의 임기중에 그 효력이 윤리위원회에 서 발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퇴직자로서 윤리위원으로 다 시 선임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주 배제는 아니라 고 생각합니다.</p> <p>● 권혁풍 위원</p>
--	--

예, 그렇습니다, 그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그런데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예, 그렇습니다.

● 권혁풍 위원

예, 그런 것을 규정에다 좀, 규정을 해주시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그것은 학식 덕망이 풍부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호는 열린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권혁풍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할 말을 줄 수 있게 그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소외를 시키지 않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9조 6항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담당관님의 답변가지고는 좀 납득이 안가니까,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마치시겠습니까?

● 권혁풍 위원

예.

● 의장 김영세

예, 그러면 관계관계서는 이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예.

● 의장 김영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위원석 침묵)

예,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까.

반대토론 하실 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침묵)

반대토론 없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p>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 없으시지요.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신 거죠, 반대의견이 없으신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p>	<p>● 홍신희 위원장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홍신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7월 30일 동 조례안이 본회의로부터 조례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당일 상정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공인은 청인파직인으로 구분하여 그 종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공인의 교부 및 등록, 재교부, 폐기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에서는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와 11조에서는 공인의 관수방법과 날인에 대하여 규정하여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하며,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후 날인토록 하여 공인의 사용에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고, 안 제12조는 교육청 소속기관의 공인</p>
<p>2.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안 (11시 18분)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한 조례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신희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희위원장 사회대로 나옴)</p>	

관리는 관할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현행 충청북도교육감소속기관관인규칙 및 이와 관련된 규정을 참고하여 조례로 보완 제정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현실성에 부합되는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심사소위원회 의결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영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홍신희 조례심사소위원장께서, 그리고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는 집행청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니다.

(위원석 침묵)

예,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또는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기타 안건처리

(11시 28분)

● 의장 김영세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기타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권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권혁풍 위원

지금 충청북도윤리위원회법이 통과가 됐는데, 지금 유권해석이 남아 있습니다.

통과는 됐습니다마는 9조 4항 6호가 아직 유권해석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위원회 차원에서는 통과가 됐다고 보고, 이것을 도의회에 제출할 것이냐 하는 여부는 그 유권해석이 나온 뒤에 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의장 김영세

여기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관계관계서 견해가 어떠신가, 답변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눔)

●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희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희입니다.

지금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

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는 모법인 공직자윤리법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시한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문제는 저희뿐 아니라 도청에서도 다소 그런 문제가 제기됐었고, 또 시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워지 않으시려는 일정에 의해서 이 법이,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관계관 발언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것은 시한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시한적인 것은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통과되고 난 이후에는 교육감에 이송되면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감이 이송하고 안하는 것을 결정할 문제지 우리는 통과시켰으면 거기서 권한은 끝나게 되며, 다만 지금 우리가 유권해석 질의를 요구했으니까, 확실한 관계기관에 유권해석을 해서 성실히 여기다 답변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권위원님.

그게 우리가 절차에 맞는 것 같아요.

● 권혁풍 위원

물론 우리가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집행청에 이송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 의장 김영세

있죠, 5일 이내에 이송을 해야합니다.

● 권혁풍 위원

5일 이내예요.

● 의장 김영세

예.

● 권혁풍 위원

그러면 뭐 유권해석을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 의장 김영세

아니, 유권해석을 받으면 그 다음 절차에 의해서 다른 해석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 권혁풍 위원

그걸 연계시킬 수가 없군요?

● 의장 김영세

예.

● 권혁풍 위원

유권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이게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로 보는데.....

● 의장 김영세

그 다음에 우리는 번안제출밖에 없습니다.

● 권혁풍 위원

번안제출 방법이 있겠죠.

그런 방법 밖에 천상 할 수밖에 없겠죠.

● 의장 김영세

일단 우리가 통과시킨거니까, 이것은 이송하는 것의 문제는 집행청의 권한이에요.

우리는 5일 이내에 이송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권해석은 별도로 받아서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절차를 강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희

예, 좋습니다.

● 의장 김영세

그렇게 성실히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예.

● 의장 김영세

예, 그러면 이상으로 어떻습니까?

● 권혁풍 위원

그거에 대한 말씀은 그만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권혁풍 위원

다른 것 한가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듣는 얘기가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정확한 얘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학교 일선에는 그야말로 열악한 환경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는 아직도 재래식 변소가 있어가지고, 즉 여교사, 남교사가 함께 쓰는 그러한 재래식 변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될뿐 아니라 이견 용변까지도 불편하다, 하는 정도의 그런 열악한 환경인데 과연 이러한 학교가 우리 도내에 몇 개교나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관리국장님한테 해야 되겠죠.

(관리국장 집행부좌석에 “예”하고 대답)

● 의장 김영세

예, 지금 그것 하나 뿐입니까?

글쎄요, 내가 보더라도 그것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얘기인데, 여교사, 남교사가 함께 쓰는 화장실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죠, 오늘 아침 인가요?

● 권혁풍 위원

보도는 그거는 아니고, 오늘 아침 텔레비 보도는 휴게실이라든가, 위생실이 안된 학교가 음성군을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 몇 학교중에 몇 학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그것도 보도

됐고, 이것은 그것과 별도로 참 미확
인 입니다. 저도, 과연 정말 남·여
가 같이 쓰는 그런 변소, 즉 한 방을
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변소는 다른데 그 밑에 떨어지는데
가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
서 아주 불편을 느끼는 그러한 학교
가, 저도 먼저 근무했던 학교가 그런
학교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그런
학교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한
번 실태 파악을 해 보고 싶어서 요청
을 드리는 겁니다.

● 의장 김영세

예, 그러며는 다음 회기에 보고해
도 되겠습니까?

● 권혁풍 위원

예.

● 의장 김영세

그러면 관계관계서, 관리국장님 한
테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다음
회기, 지금 답변하실 수 있어서 답변
하셔도 좋은데 하실 수 없다면 다음
회기까지 하셔도 됩니다.

다음 회기에 하시죠?

● 관리국장 신재철

예.

● 의장 김영세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종결하시
죠?

● 권혁풍 위원

예.

● 의장 김영세

그러면.....

(이재희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이재희위원 말씀하시지요.

● 이재희 위원

예, 앞으로 고등학교 입학시험이 다
가오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며는 학생 과학경시대
회는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을 해서
충북도 대표로 전국 규모의 이런 대
회도 출전한 학생이 과학고등학교에
는 낙방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고등학교라든지
예술고등학교는 그 부분의 특기생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대를 하고 있는데
과학고등학교에는 과학경시대회 우수
자를 낙방을 시키는 건 조금 재고할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이 과학교등학교도 어떠한 특기생 모집이라든지 이런걸 좀 염두에 두시고서 뭐 일부에서는 상당히 불평도 나오는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이것은 참고사항 이지요?

● 이재희 위원

예.

● 의장 김영세

답변을 요구하는 거는 아니지요?

● 이재희 위원

예.

● 의장 김영세

예, 또.

뭐 마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기타 질문 이상으로 마치지요.

그러면 기타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번 의결한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안이 확정되면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지고, 동 윤리위원회에서는 우리 교육위원을 비롯한 도교육청 고위 공직자들의 등록재산을 심사하게 되며, 그에 앞서 9월 11일까지 각자의 재산을 신고하게 되어 있는 만큼, 우리 모두 성실한 신고가 되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2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 출석위원수 : 1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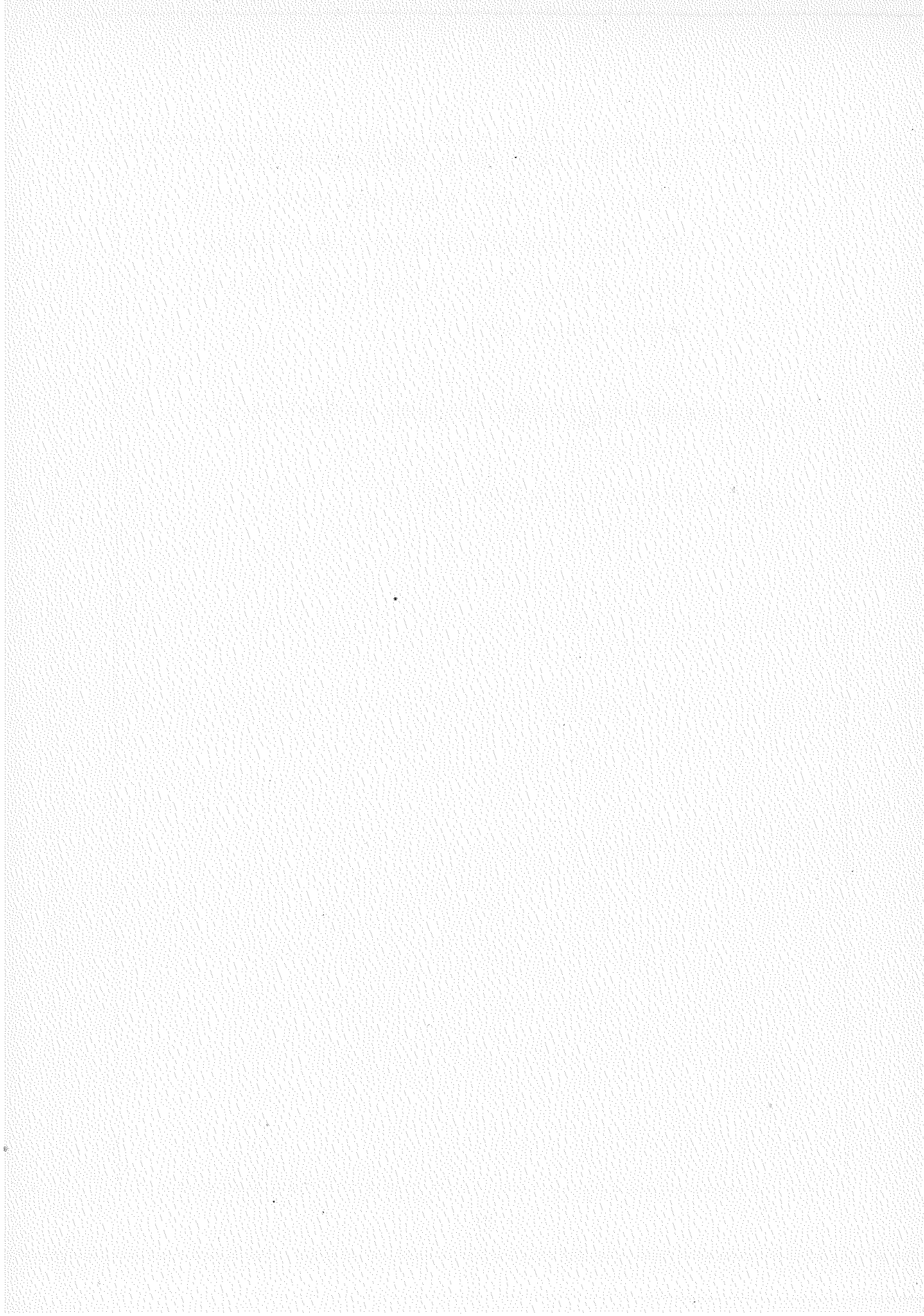
의장 김영세, 부의장 김광수, 위원 이상일, 이재희, 홍신희, 김용복,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풍호.

○ 출석공무원 : 14명

부교육감 박동기,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공보담당관 청금옥,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초등장학과장 김학목, 초등교직
과장 김재성, 중등장학과장 송대현, 사회교육체육과장
정철진,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정헌동, 시설과장 박성근.

-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 별첨 2.
-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안 : 별첨 3.



(별첨 1)

議 事 日 程(案)

第 26 回 忠 清 北 道 教 育 委 員 會 (臨 時 會)

1993. 7. 30. - 7. 31. (2일간)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93.7.30(금) 14:30	※ 개회식 【 제1차 본회의 개의 】 1. 제2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3.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안 제안설명 【 제1차 본회의 산회 】 ※ 소위원회 활동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2.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관한조례안 심의·의결 및 심사 보고서 작성 3.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안 심의 ·의결 및 심사보고서 작성	회 기 7.30.-7.31. (2일간)
7.31(토) 10:30	【 제2차 본회의 개의 】 1.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 조례안 의결 2.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안 의결 3. 기타 안건 처리 【 제2차 본회의 산회 】 ※ 폐회	

(별첨 2)

의안번호	제 26 - 1 호
의결 년 월 일	1993. 7 (제 26 회)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제출년월일	1993. 7 . .

법무담당부서심사필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1993. 8.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정이유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위원회의 구성(안 제2조).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9명
 - 5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 4명의 위원은 교육위원 2명, 교육감 소속 공무원 2명
- 위원회의 기능(안 제3조).
 -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 처리 등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안 제4조).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1차 연임 가능).
 - 위 2년에 불구하고 교육위원은 재임기간, 소속 공무원은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
 - 결원의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 제정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

□ 조 례 안 : 덧 붙 임

□ 참고사항

- 예 산 상 황 :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
- 관계법령 발췌서 : 덧 붙 임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5인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2. 4인의 위원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2명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 2명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전항 제1호의 5인중에서 선임
2. 부위원장은 전항 제2호의 4인중에서 선임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및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위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 (위원회의 간사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간사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제8조 (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 산 상 황

○ 기정예산액 : 없 음

○ 예산소요액

- 위원수당 : 30,000원 × 7명 × 3회 = 630,000원
- 국내여비 : 50,000원 × 35명 = 1,750,000원 (등록사항심사)
- 수용비및수수료 : 1,300,000원 (교육자료 및 제양식인쇄)
- 자산취득비 : 350,000원 (서류보관금고 및 양식함 제작)

계 : 4,030,000원

○ 예산확보 : '9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요구

관계법령 발췌서

○ 공직자윤리법(부분 발췌)

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 제11항 후단의 결정에 의한 승인
3.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은 다음과 같다.

1. ~ 6호 생략

7.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교육위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8호 생략

③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을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임원의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다.

1. ~ 5호 생략

6.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⑤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법과 제4항 각호에 규정된 규칙·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1조 (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별첨 3)

의안번호	제 26-2 호
의 결	1993. 7. 31.
년 월 일	(제 26 회)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3. 7.

법무담당부서심사필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1993. 8.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은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 제41조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충청북도
교육감소속기관관인규칙을 폐지하고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함.

□ 주요골자

- 공인의 종류 및 규격 (안 제2조 및 제3조).
- 공인의 교부 및 등록, 재교부, 폐기 (안 제5조 및 제6조).
- 공인의 관수 방법 및 날인 (안 제10조 및 제11조).

□ 제정근거

-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 제41조

□ 조례안 : 덧붙임

□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서 :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 제36조 및 제41조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무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하급교육행정기관, 각급학교, 회계관계공무원 및 각종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및 비치) ①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의결기관·자문기관등 각종위원회는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에 있어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③제2항이외의 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가진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거나 임명된 자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중 교육감이 그 직인의 비치할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④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한 직인을 가진다.

⑤교육감은 창구직결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직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⑥직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조(규격·글씨 및 재료) ①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

②공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③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 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인영의 내용) ①공인에는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민원사무전용 공인에는 하단부에 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어 선을 긋고 '민원사무전용'이라고 새긴다.

제5조 (공인의 교부 및 등록) ①교육감은 공인을 새겨 이를 교부한다. 다만, 사립학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교부받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교부신청서에 의하여 공인교부기관에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공인교부기관은 제1항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거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폐기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공인의 재교부 신청 및 폐기신고) ①공인관리기관은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었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 교부기관에 공인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공인관리기관은 제1항 또는 그 외의 사유로 종전의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공인의 교부기관에 공인폐기신고를 한 후 이를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의 재교부 신청 및 폐기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 (공고) ①공인교부기관은 공인의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사유
2. 교부·재교부 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8조 (인영의 인쇄사용) ①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또는 계(이하 '처리과'라 한다)의 장은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인 관수자) 공인 관수자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교육감 및 보조기관 직인 : 관리국 총무과 서무계장
2. 교육장 직인 : 관리과 서무계장
3. 민원사무전용 교육감 직인 : 관리국 총무과 민원봉사계장
4. 본청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 담당업무 주무계장 또는 담당업무 주무자
5. 하급교육행정기관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 관리과 또는 재무과 경리계장
6. 교육감 소속 직속기관장 직인 및 교육감 소속 직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 주관과장
7. 각급 학교장 직인 및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 서무책임자 단, 서무책임자가 없는 학교는 교감
8. 각종위원회 청인 : 당해 위원회의 서무책임자

제10조(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두어야 한다.

제11조(공인의 날인) ①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공인은 기관명 또는 직명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제12조(권한의 위임) 교육감은 교육장 소속기관 공인의 교부·재교부·폐기의 권한을 그 관할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사용중인 공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교부등록되어 비치 사용중인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교부 등록된 것으로 본다.
- ③ (규칙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교육감소속기관관인규칙 ('91. 10. 25 규칙 제329호)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공 인 규 격 (제3조 관련)

(단위 : 센티미터)

	구 분	한변의길이
청 인	1. 각종위원회 청인	3.6
직 인	1. 기관장	
	가. 교육감 (민원사무전용 포함)	2.7
	나. 2급,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교육장, 초·중등학교장, 유치원장 포함)	2.4
	다. 4급,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1
	라. 6급, 7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8
	2. 회계관계공무원	
	가. 징수관, 경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및 그 분임 자	2.0
	나. 출납원, 물품출납원 및 그 분임자와 유기증권 취 급공무원	1.8

【별지 제1호 서식】

기 관 명

문서번호 : _____ (전화번호 : _____)

시행일자 :

수 신 : _____ 발 신 : _____ 인

참 조 :

제 목 : 공인교부 (재교부) 신청
 공인폐기신고

공 인 명			
종 류		<input type="checkbox"/> 청 인 <input type="checkbox"/> 직 인 <input type="checkbox"/> 특수공인	
교부 (재교부 · 폐기) 사유			
폐 기 대 상 공 인 처 리	폐 기 예 정 일 (분 실 일)	년 월 일	
	폐 기 방 법	<input type="checkbox"/> 소 각 <input type="checkbox"/> 이 관 <input type="checkbox"/> 기 타 ()	
	폐 기 자	소속 : _____ 직급 : _____ 성명 : _____	
비 고			

【별지 제2호 서식】

공 인 대 장

공 인 명					
종 류	<input type="checkbox"/> 청 인 <input type="checkbox"/> 직 인 <input type="checkbox"/> 특수공인			관리부서	
교 부 재 교 부 승 인	(인 영)	등 록 일	년	월 일	
		새 긴 날	년	월 일	
		새긴 사람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최초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교부 사유			
		관보 공고	년	월 일	(제 호)
		비 고			
폐 기 공 인	(인 영)	등 록 일	년	월 일	
		폐 기 일 (분 실 일)	년	월 일	
		폐기 사유	<input type="checkbox"/> 마 멸	<input type="checkbox"/> 분 실	<input type="checkbox"/> 기 타()
		폐기 방법	<input type="checkbox"/> 소 각	<input type="checkbox"/> 이 관	<input type="checkbox"/> 기 타()
		폐 기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관보 공고	년	월 일	(제 호)		
비 고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3호 서식]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

인쇄문서명			
공 인 명		인쇄관리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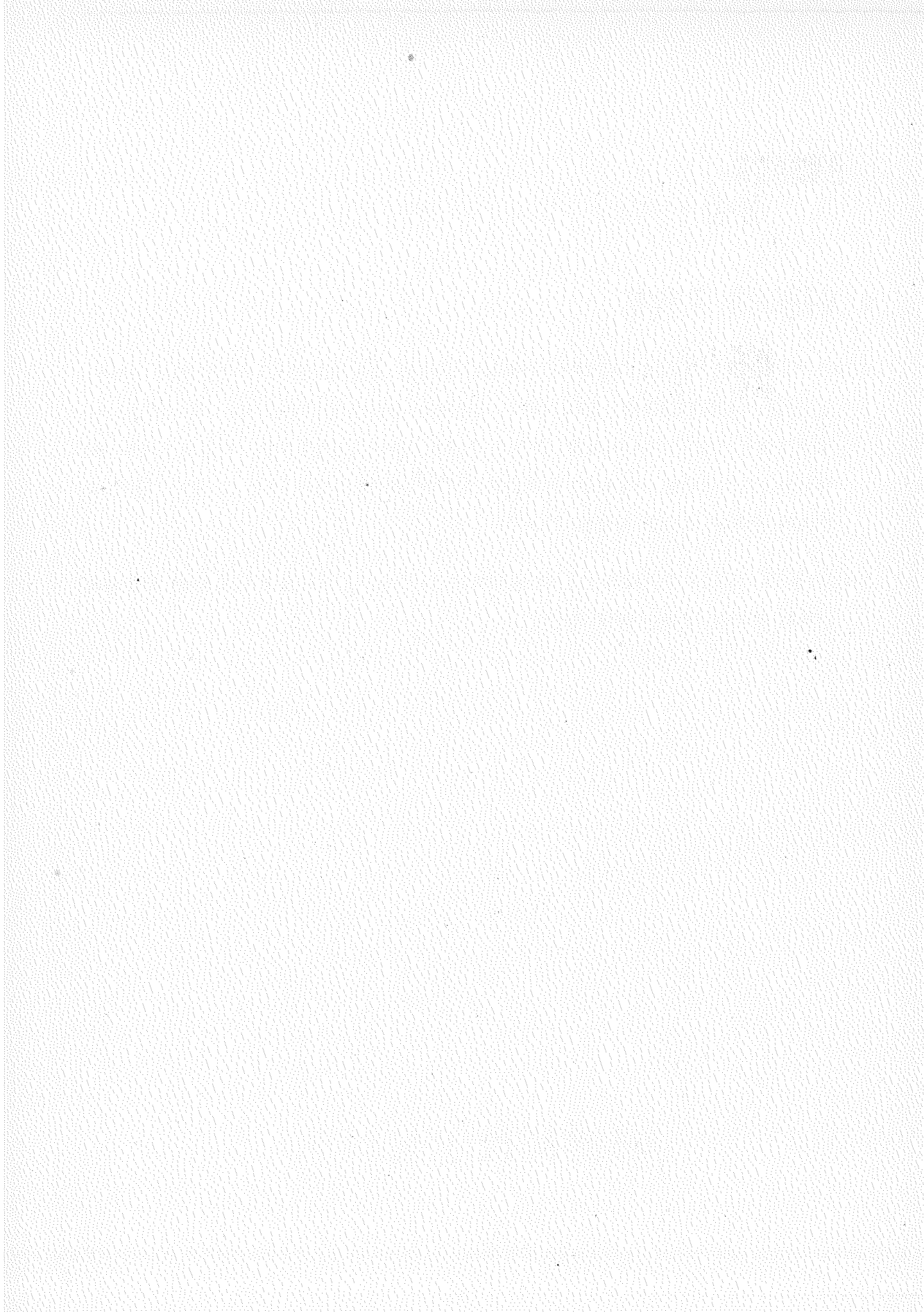
일 자	인쇄량 (매)	사용량 (매)	사 용 내 역	잔여량 (매)	확 인 (서 명)

관계법령발췌

0 사무관리규정 (부분발췌)

제36조 (특수관인) ①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교육부장관이, 군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국방부장관이, 검찰기관이 사용하는 관인은 법무부장관이, 외무부 및 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할 관인은 외무부장관이, 세입징수관·지출관·회계기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재무부장관이 각각 그 규격·등록 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41조 (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26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條例審查小委員會 會議錄

(' 93. 7. 30)

條例審查小委員會

THE UNIVERSITY OF CHICAGO

PHILOSOPHY

1998

PHILOSOPHY

목 차

1. 제2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조례심사소위원회 3

2. 부 록

가)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 17

나)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안 심사보고서 21

제 26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

1993년 7월 30일 (금요일) 16시 04분

의 사 일 정 (제26회 임시회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안
4. 심사보고서 작성

부 의 된 안 건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안
4. 심사보고서 작성

(사회 : 의사과장 이영규)

(16시 14분 개의)

1. 위원장·간사 선임
- 임시위원장 장충호
지금부터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제26회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조례심사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니다.

회의규칙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의거, 위원장과 간사는 1인씩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구두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합니다만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김광수 위원

홍신회위원님을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장충호

김광수위원님께서 홍신회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신회위원님으로 찬성하신 거죠?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모든 위원님이 찬성하시므로 조례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홍신회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사선임을 위한 회의는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홍신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신회

조례경험도 없는 제가 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좀 도와주셔서 생산적이고 빈틈없이 두 건의

조례심사가 잘 돼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은 모두 다섯분인데 감사선임을 하겠습니다.

감사선임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 김광수 위원

간사는 이재희위원님으로 하는 것으로 하죠.

● 위원장 홍신회

간사를 이재희위원님으로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 의사진행의 손을 먼저 이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 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이것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고, 두번째로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안 이것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 과운영에관한조례안

●위원장 홍신회

먼저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 과운영에관한조례안, 아까 그 본회에서 그 제안설명이 대체적으로 됐는

데, 또 한번 제안설명을 들을까요?

● 김광수 위원

이것을 읽어봤는데 8조니 9조니하는
윤리법이 말이지, 그런 얘기가 나오
고 있어요.

그러니까 8조, 9조 뭐 이런 것이
무엇인가하는 것을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홍신희

지금 담당관님 나와 계시니까 이걸
또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희

예

● 위원장 홍신희

그래서 개요까지, 이걸 축조심의
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또 상당히
이것은 실무진에서 다듬어져 온 것이
고, 또 어떤 그 모델을 갖다 놓고서
성안이 된 것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
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일단 그
제안설명을 듣고 문제점이 있으면 문
제점을 토론하고, 전체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설명해 주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희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희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
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홍신희

설명을 다 들으셨는데, 하나 여쭙
보고 싶은 것은 이게 어떤 그 모형에
의해서 이걸 만드신 건가요?

● 관리국장 신재철

교육부에서는 이번에 준칙이 시달
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는 도청에 준칙
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법을 가지고 동일한
조례를 만드는 만큼, 구성인원에 대
해서는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법적인
모든 성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는 큰 다를게 없어 그 조례 준칙을
갖다가 저희들이 모형으로 했습니다.

● 김광수 위원

내무부로 나와 있는 것을?

●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희

예.

● 이상일 위원

그럼 이 교육부에서는 준칙이 내려올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희

예.

● 위원장 홍신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저쪽 도의회로 이 조례안이 넘어갈텐데, 현재 도의회에서는 이와 같은 조례안이 준칙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신희

그러면 결국 거의 이것하고 같다고 봐야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신희

거기도 9인으로 됐죠?

●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희

예, 공직자윤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이의를 제기할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8조에 들어있는 예산이 그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기서 말하는 예산의 범위라는 게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희

실제 예산상 반영된 범위내를 얘기합니다.

확보된 예산범위내죠.

● 김광수 위원

그럼 예산이 확보된 것이 440...?

●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희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해서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 추경에 자료를 낸 것입니다.

● 김광수 위원

글쎄요, 그러니 이 범위라고 보는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희

예, 그렇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도에서 수당이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건가 그것을 한번 참고로 해야 될 것 같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

그래서 도청하고 약간 그 보조를 맞추겠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 사람들이 3만원으로 했는데 우리가 5만원 할 수도 없고,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그 1일 3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좀 약하다, 이런 얘기에요, 일비가.

그러니까 이것이 저 도에 수준을 맞춰서 그 사람들이 5만원을 했으면 5만원을 해야 되겠고, 또 그 사람들이 3만원을 했는데 우리가 5만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것은……

●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

예, 그렇게 기준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신희

지금 이 교육위원 일비나 저쪽 도 의원 일비정도는 최소한 해야지, 이

거 서로 꺼려서 잘 만나오려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

지금 교육위원중에서 두분하고 집행기관에서 두분, 이렇게 되는 분야야 뭐 싫으나 좋으나 어쨌든 누가 하든지 해야되는 거지만, 외부에서 초빙하는 분들이야, 이게 무슨 참 좋은 일이라고 들어와 가지고 하겠어.

그건 좀 상향조정할 수 있는 대로 맞추고……

●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

예, 도청하고 상의를 해서 맞추겠습니다.

● 위원장 홍신희

아마 거기서도 그 문제가 필연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실제 일을 할 수 있도록 대접을 해줘야지.

●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

예.

● 위원장 홍신희

그리고 제2조 3항에 교육위원을 두 분 모시는 거 아닙니까?

“교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두분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나요?

무슨 의장이 추천을 두사람 한다고 하면……

●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회

예, 저희들이 여기서는 심사숙고하시라는 뜻에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홍신희

전체적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회

예.

● 위원장 홍신희

그 원형 모델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회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신희

본회의에서 추천하는 걸로?

●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회

예.

● 위원장 홍신희

뭐 이견 안건 하나 만들어서 추천하면 어려울 건 없죠 뭐.

● 김광수 위원

그래요.

● 위원장 홍신희

번거로울 건 없고, 신중을 기한다는 그런게 되겠죠.

또 다른 조항 말씀해 주시죠.

이 지금 제2조에 두째줄 같은 경우는 말이죠, 그 “다음 각호의 1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이게 그 표현이 말이에요, 각호에 이 1자죠, 이거?

●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회

저 3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홍신희

2조1항둘째줄 “다음 각호의 1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1자죠?

●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회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러면 이거 부를제 1호 위원5명, 2호 위원4명 이런 애긴데 그렇죠?

그 부르는게……

●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회

예, 호가 되겠습니다.

항간에는 호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홍신희

그럼 항간에는 당연히 호지.

그럼 각호며는 다 들어가는 건데 벌써, 부를때 1,2호가 들어가는데 각호인데 “각호의 1규정에 의하여...” 할 적에 이게 문맥이 말이에요.

1을 빼도 되겠어요.

“각호에 의해서”하면 1호 규정에 의해서 이런 뜻 아닌가?

● 김광수 위원

그렇지.

● 위원장 홍신희

그 원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무부에서 나온 것.....

● 기획감사담당관실 강연구

(집행부좌석에서)

원안에 그렇게 되어있진 않고요,이거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행관실 법무계 담당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다음 각호의 규정이라하면 1,2 안이 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각호1이라고 하면 그 안마다 5인 4인 따로 나눠져있기 때문에 1이 들어가야지 맞

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넣게 됐는데요.

● 이재희 위원

아니 그 구분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1은 빼도 문맥상으로 크게.....

● 위원장 홍신희

표현이라는게 이게 “각호의 1규정에 의하여”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건 빼더라도 아무런 문맥상에 지장은 없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

예, 그렇습니다.

● 김광수 위원

1이 들어있으면 곤란할 거예요.

1이 없어야 돼요.

● 이상일 위원

벌써 그 밑에 넘버가 붙어있는데... 그런 문제가 또 만데서 나온데가 있을 거예요.

그게 저 6조2항의 둘째줄을 보더라도 “다만 다음 각호의 1사항은” 이렇게 돼 있거든

● 김광수 위원

그게 많으네.

2조 구성1에도 두번째줄에 1규정이
라 돼있고 또 지금 얘기한 대로 그2
에도 지금 지적한 그 1 거기도 있고
그 1, 그런 것은 빼야되겠어.

● 위원장 홍신희

그 문맥을 다듬으실 적에 정리를
한번 해 가지고 그 항목을 일절 빼면
은 오히려 더 부드럽고 얘기가 잘 통
하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희

예, 알겠습니다.

(의안담당관이 “각호 1 규정”으로
쓰여진 공직자윤리법을 위원장에게
보여주며 1을 넣는 것도 무방하다고
말함)

● 위원장 홍신희

윤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고치
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김광수 위원

공직자윤리법에 “각호1” 이렇게 나
와요?

(“예”하고 의안담당관이 대답)

그렇다면 그냥 놔둬야죠.

● 위원장 홍신희

뭐 달리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 장충호 위원

아까 말씀드린 충청북도교육청공직
자윤리위원회라고 되어있는데, 우리
교육위원회로서는 좀 같이 포함되어
서 이게 얘기 아닙니까?

우리 교육위원회로서의 독립된 거
는 없는 거지?

● 이상일 위원

그런데 이게 9조에 보니까 정부하
고 지방자치단체를 놔두고 끄트머리
가서 시·도교육위원회 이렇게 별도
로 되어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희

예, 9조의 6호에 보면그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시, 직할시, 도교육청공직자윤
리위원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러니까 교육위원회라는 구별을
안했죠?

●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희

예, 별도로 구분이 안돼있습니다.

● 장충호 위원

그럼 도에는 어때요?

도의원들의……

●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회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장충호 위원

충청북도?

●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회

예.

● 이상일 위원

그럼 지방단체라고 해서 집행청하고 의결기관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 ?

●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회

예, 하나로 본 겁니다.

● 김광수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가 등록되는 사람은 교육감, 하나는 교육감, 부교육감 또 국장도 들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회

예, 국장 세분 다 들어갑니다.

● 김광수 위원

국장 세분이 다 들어가고,

●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회

예, 지역교육장, 직속기관장,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 김광수 위원

그럼 몇명이에요? 4급이상,

●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회

여섯명입니다.

지방직 4급이 다섯명이고 국가직이 한명해서 여섯명입니다.

●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이게 저기 교육위원회 공개 대상은 교육감, 교육위원……

●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회

예, 그렇습니다.

12분이 되겠습니다.

● 김광수 위원

예산관계나 그쪽에서 잘 상의하시고……

●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신희

이제 그 각호의 1규정 이런것 잘 문맥을 다듬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회

예, 알겠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게 말하자면 1, 2, 3, 4, 5, 6 이럴적에 1항이 아니고 이중에서 하나다,

<p>이거죠?</p> <p>●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희 예, 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 따로따로 쓴다는 뜻에서……</p> <p>● 위원장 홍신희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청북도교육청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습니다.</p> <p>3.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안</p>	<p>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충청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규칙을 폐지하고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인의 종류 및 규격, 이것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 명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인의 교부 및 등록 재교부·폐기 이거는 안 제5조및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의 관수방법 및 날인은 안 제10조 및 11조가 되겠습니다. 제정근거는 사무관리규정 제41조가 되겠습니다.</p>
<p>(16시 26분)</p> <p>● 위원장 홍신희 그럼 다음 두번째 안으로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관계관계서는 설명해 주시죠.</p> <p>● 총무과장 고일영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은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p>	<p>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마디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규칙에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충청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규칙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격상시키는 것입니다.</p> <p>〈참 조〉 2.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안</p> <p>(끝에 실음)</p>

● 김광수 위원

격상을 시키는 거네요.

● 총무과장 고일영

예.

● 장충호 위원

관인을 공인으로 고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고일영

예, 그것은 대통령령인사관리규정에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는 것은 공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국가에서 쓰는 것은 관인이라하고?

● 총무과장 고일영

예, 예.

● 이상일 위원

그래서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청인이라는 것은……

● 총무과장 고일영

청인은 각종 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뭐 검정고시위원회, 교육공무원 일반정계위원회,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뭐 인사위원회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인에 대해서는 어디고 확실하게 명시돼 있는게 없는데요, 이 대통령령으로 나와있는 사무관리규정 제37조에 “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1과 같다” 했는데, 그 별표에 국무회의인 또 위원회인 그것은 청인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나와있는데 청인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따서 청인으로 했습니다.

● 이상일 위원

청인하고 직인하고 합쳐서 공인으로 한다?

● 총무과장 고일영

예.

● 위원장 홍신희

그런데 이게 무슨 불편이 있어서 고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해오던,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던 것을 조례로다 해가지고 하나의 지방조례로 확정을 지어논다, 이런 얘기죠?

● 총무과장 고일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신희

<p>그럼 먼저 규칙도 이런 체계적인...</p> <p>● 총무과장 고일영 예, 그렇죠.</p> <p>● 위원장 홍신희 그걸 전부 조례형식으로 바꾼거죠?</p> <p>● 총무과장 고일영 예, 바꿨습니다.</p> <p>● 위원장 홍신희 뭐 질문있으시면..... 뭐실무적인 것이니까요.</p> <p>● 총무과장 고일영 이게 과거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사무관리규정을 제정한면서 그 41조, 여기 첨부가 됐습시다마는 거기에 “지방자치단체 공인에 관하여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만든겁니다.</p> <p>● 위원장 홍신희 그러면 본건에 대해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심사보고서 초안작성협의를</p>	<p>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35분 회의속개)</p> <p>4. 심사보고서 작성</p> <p>● 위원장 홍신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로부터 두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서작성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음)</p> <p>● 간사 이재희 보고드리겠습니다.</p> <p>----- <참 조> 3.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4.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p> <p>-----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p> <p>● 위원장 홍신희 본 두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서에 대하여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문은 없으시고, 그럼 이의 있으</p>
--	---

<p>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두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두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보고드린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p>	<p>다. 오늘 심의·의결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와 함께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6시 45분 산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위원수 : 5명 위원장 홍신희, 간사 이재희,위원 김광수, 장충호, 이상일. ○ 출석공무원 : 2명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총무과장 고일영. ○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 별첨 1. ○ 충청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안 심사보고서 : 별첨 2 	

(별첨 1)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1993. 7. 30.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 및 회부 일자

○ 제출일자 : 1993. 7. 27.

○ 회부일자 : 1993. 7. 30.

다. 상정일자 : 제2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1993. 7. 30.)

○ 조례심사소위원회 심의·의결(1993. 7. 30.)

2. 제안설명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할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위원회의 구성(안 제2조)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9명

· 5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 4명의 위원은 교육위원 2명, 교육감 소속공무원 2명

○ 위원회의 기능(안 제3조)

·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외 그 결과처리 등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안 제4조)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1차 연임 가능)

· 위 2년에 불구하고 교육위원은 재임기간, 소속 공무원은 재직중인 기간

· 결원의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질 의		답 변	
질의자	주 요 내 용	답변자	주 요 내 용
위원장 홍신희	이 조례 제정에 대한 모델은 없었는가?	기획감사 담당관 신택희	교육부의 별도의 인이 없어, 내부부에서 신하기관에 시달린 준직을 참고하여 조례안을 작성했음.
위원 이재희	앞으로 이에 대한 준직이 없을 것으로 보는가?	"	그렇게 생각함.
위원 김광수	제8조(수당)외 관련하여 참고자료로 소요예산 신출액을 내주셨는데, 위원수당 30,000원은 너무 적지않은가?	"	예산신출액은 현재의 예상액이지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앞으로 더 연구해 보되 타 윤리위원회 외 형평을 맞추겠음.
위원장 홍신희	인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교육위원을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위원회 의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함이 어떤가?	"	그런 방안도 고려를 해보았으나 위원회 구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과 같이 하였음.

4. 토론 주요내용

해당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위 조례안은 공직자 윤리법이 천명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를 확립토록 한다."라는 본 뜻을 잘 반영하였으며, 기타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적절히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6. 심사결과

원인가결

7. 소수의견

없음

(별첨 2)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안 심사보고서

1993. 7. 30.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3. 7. 27.

○ 회부일자 : 1993. 7. 30.

다. 상정일자 : 제2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1993. 7. 30.)

○ 조례심사소위원회 심의·의결(1993. 7. 30.)

2. 제안설명 주요내용

가.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는 사무관리규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소속기관규칙을 폐지하고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공인의 종류 및 규격(안 제2조 및 제3조)
- 공인의 교부 및 등록, 재교부, 폐기(안 제5조 및 제6조)
- 공인의 관수방법 및 날인(안 제10조 및 제11조)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질의		답변	
질의자	주요내용	답변자	주요내용
위원 이재희	새로이 공인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총무과장 고일영	사무관리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이에 따라 종전에 교육감규칙으로 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격상시켜 제정하려는 것임.
위원 이상일	공인은 정인과 직인으로 구분한 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인은 무엇입니까?	"	정인은 각종 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으로 예를 들면 검정고시 위원회인, 공무원징계위원회인 등등이 그 것입니다.

4. 토론 주요내용

해당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위 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현행 충청북도교육감소속기관관인 규칙을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조례로 보완 제정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현실정에 부합되는 적절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없음

